

# 사회복지연구소 규정

제정 : 2015. 08. 07.

담당자 : 교학팀(02-950-5406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사업)	제4조(조직)
제5조(임무)	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	제7조(운영위원회의 역할)	제8조(재정)
제9조(회계연도)			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76조에 따라 대학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(이하 "본 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3조(사업)**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학술세미나 및 특강 개최
2.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
3. 학술지 및 보고서 발간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

**제4조(조직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 
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본교 사회복지학과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
**제5조(임무)**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 
② 연구위원은 연구수행 및 연구소 운영을 담당한다.  
③ 사무직원은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연구소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**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 
② 위원회는 소장, 연구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  
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관리 규정[2-1-3-2]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의 역할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
2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3. 연구계약 체결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8조(재정)** ① 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은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.

② 연구원의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성서대학교의 「학술연구비 규정[3-2-0-1]」에 따른다.

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평가실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